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경부 180-889 (전화번호 22-7593 )	전결규정 27 조 2 항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79. 5.	
시령일자	79. 5.	
보준년한		
보조기관	1부 국장 경부과장 기획계장	
기안작성자	경위 김이택	79. 5. 9
경수참조	각안참조	통 계
제 목	도로교통법위험방지 고시 개정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위험방지 고시 개정 1. 제안 이유 2. 동거 운전면허 취득후 1년 미만의 운전경험 부족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안전 "초보 운전" 이라는 표시를 하고 운전하게 함으로서 운전 면허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하고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7호의 규정이 위험이 고시를 적용토록 합니다.	
첨부	B. 지정 사유 1부 C. 고시안 1부	
제안안		

경부 180 - 14850

79. 5.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해 방지 고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전  
자 준수 사항중 위해 방지를 위하여 고시를 제정 하였기 시행에 착

오 언토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 부. 끝.

수신처 가라 11 ~ 27 (교통법 제 44조)

시경 1 ~ 22 (경우권, 경비권)



## 1. 제정 사유

운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초보 운  
전"이라는 표시를 하게 하여 운전 경험 부족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  
함에 있음.

2.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발령시	1979.5.29	제 12호
담당자	집재계장	법무장관
장	처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해 방지 고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의 준수 사항 중 위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 운전 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간 자동차의 후면 유리 좌측 하단에 "초보 운전" 이라는 표지를 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2. 운전 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라함은 운전 경험이 없는 자가 새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것을 말하며 다음 규정은 제외한다.

가. 한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류의 면허를 새로 취득한 자.

나.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다가 재 취득한 자.

다. 소형 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자.

3. 운전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권이래 함은 취득후 계속 운전 기간을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권을 말한다.

4. "초보 운전" 표지판은 다음과 같다.

초 보 운 전

가. 세로 10, 가로 30센티미터 아크릴판으로 제작하여 붙이고 땀수 있게 한다.

나.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표시 한다. 끝.